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3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김선교·구자근·김성원

김위상 • 송석준 • 박덕흠

최수진 · 김예지 · 서천호

윤상현 · 김상훈 · 강대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	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
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	에 대한 세액공제) ①
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<u>2025</u>	<u>2028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1호 각 목	<u>년 12월 31일</u>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	
상콘텐츠(이하 이 조에서 "영	
상콘텐츠"라 한다)의 제작을	
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	
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	
용(이하 이 조에서 "영상콘텐	
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 있	
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	
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	
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	
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	
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	
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	
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	
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	
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	
에서 공제한다.	

#### 1. • 2. (생략)

#### ② · ③ (생 략)

제25조의7(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저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(이하 이 조에서 "영상 콘텐츠"라 한다)를 제작하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 른 문화산업전문회사(이하 이 조에서 "문화산업전문회사"라 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 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・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
1	. '	2 (	( 혀	행과	北	ر ف
Ι.	• 4	८. ≀	( 47	W 14	7=	$\overline{\Box}$

2	•	(3)	(현행과	같음)

세25조의7(내국법인의	문화산업
전문회사에의 출자에	대한 세
액공제) ①	
<u>2028년 12월</u>	<u> 31일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	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